



보도 일시	2022. 7. 6.(수) 10:00	배포 일시	2022. 7. 6.(수) 10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승현 (02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박창두 (02-2110-4059)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김문실 (044-202-7157)
		담당자	서기관	오지영 (044-202-7145)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	책임자	과 장	이덕민 (044-201-1531)
		담당자	사무관	신종갑 (044-201-1538)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책임자	과 장	이종호 (044-200-5460)
		담당자	사무관	김덕영 (044-200-5471)

'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, 7,388명 배정 확정

- 내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전국 확대, 종자생산 양식업·굴 가공업에도 적용 -

- ☐ 정부는 2022. 6. 30.(목) 서울글로벌센터에서 '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'*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·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방안에도 논의했습니다.

* 법무부(출입국정책단장 주재), 고용노동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,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관련 현안 등을 논의

-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·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,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,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(붙임 1 참조) 했습니다.

※ 상반기 배정 인원 12,330명에 더해,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,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

○ 한편,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·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·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, 종자생산(해조류, 전복) 양식업,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□ 정부는 그 동안 농·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·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·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했습니다.

○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,330명의 계절근로자 중,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,311명*이 입국하여 농·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,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(48개 지자체, 1,850명)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, 농·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

*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4,497명,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814명(6. 26. 기준)

○ 또한, 올 상반기부터 ‘공공형 계절근로 사업’*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·임실군,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·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,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,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*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,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

○ 뿐만 아니라,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‘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(커뮤니티)’*를 개설·운영하여 농·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(붙임 2 참조)했습니다.

* 법무부·고용노동부·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및 13개 광역 지자체·126개 기초 지자체의 계절근로 담당자 등 업무 관계자 330명 참여·활동 중

- ☐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·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·소통을 강화하여 농·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
※ 붙임 : 1.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
2. 2022년 하반기 주요 개선사항



붙임 1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

지 자 체		농 업		어 업		합 계	
지 역	시·군	고 용 주	근 로 자	고 용 주	근 로 자	고 용 주	근 로 자
강원도	속 초 시			15	61	15	61
	영 월 군	13	42			13	42
	정 선 군	12	36			12	36
	평 창 군	35	113			35	113
	홍 천 군	6	24			6	24
	화 천 군	10	28			10	28
	횡 성 군	41	112			41	112
경기도	고 양 시	16	57			16	57
	광 명 시	4	9			4	9
	광 주 시	10	28			10	28
	시 흥 시	9	22			9	22
	안 성 시	14	41			14	41
	용 인 시	2	3			2	3
	이 천 시	57	182			57	182
	파 주 시	28	153			28	153
	화 성 시	7	30			7	30
경상남도	거 제 시			3	18	3	18
	거 창 군	54	183			54	183
	김 해 시	25	42			25	42
	밀 양 시	57	120			57	120
	산 청 군	53	126			53	126
	진 주 시	12	48			12	48
	창 녕 군	38	96			38	96
	하 동 군	10	22			10	22
	함 양 군	16	50			16	50
	함 천 군	18	73			18	73
경상북도	김 천 시	16	48			16	48
	문 경 시	11	27			11	27
	봉 화 군	22	65			22	65
	상 주 시	77	308			77	308
	영 덕 군	12	37	25	78	37	115
	영 주 시	36	85			36	85
	영 천 시	19	42			19	42
	예 천 군	29	107			29	107
	의 성 군	44	112			44	112
	청 송 군	30	132			30	132
세 종 특 별 자 치 시	포 향 시			68	240	68	240
	세 종 특 별 자 치 시	12	15			12	15
전라남도	강 진 군	5	14			5	14
	고 흥 군	38	137	44	287	82	424
	곡 성 군	10	24			10	24
	나 주 시	16	46			16	46

지 자 체		농 업		어 업		합 계	
지 역	시·군	고 용 주	근 로 자	고 용 주	근 로 자	고 용 주	근 로 자
전라남도	담 양 군	58	115			58	115
	무 안 군	12	86			12	86
	보 성 군	28	190			28	190
	순 천 시	7	21			7	21
	신 안 군	6	26			6	26
	영 광 군	11	33			11	33
	완 도 군			229	659	229	659
	장 성 군	16	39			16	39
	장 흥 군	10	21			10	21
	진 도 군	27	107	87	259	114	366
	합 평 군	31	81			31	81
	해 남 군			34	147	34	147
	화 순 군	29	117			29	117
전라북도	군 산 시	4	6	22	23	26	29
	김 제 시	18	55			18	55
	남 원 시	7	11			7	11
	무 주 군	23	53			23	53
	부 안 군	4	17			4	17
	순 창 군	10	33			10	33
	익 산 시	18	43			18	43
	임 실 군	17	34			17	34
	정 읍 시	15	60			15	60
제주특별자치도	서귀포시	36	87			36	87
	제주시	47	116			47	116
충청남도	공 주 시	30	114			30	114
	금 산 군	61	144			61	144
	논 산 시	48	134			48	134
	당 진 시	42	177	1	2	43	179
	보 령 시	7	15	11	28	18	43
	부 여 군	39	101			39	101
	서 산 시	9	36			9	36
	서 천 군			7	23	7	23
	예 산 군	18	66			18	66
	청 양 군	24	63			24	63
충청북도	태 안 군	27	110	18	111	45	221
	단 양 군	16	36			16	36
	보 은 군	48	90			48	90
	영 동 군	10	14			10	14
	음 성 군	10	27			10	27
	증 평 군	3	10			3	10
	진 천 군	17	57			17	57
	청 주 시	32	68			32	68
전국 84개 지자체		1,799	5,452	564	1,936	2,363	7,388

붙임 2 2022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사항

1.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적용 분야 확대

-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농·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에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

※ 경북 상주시 꽃감 가공, 강원 속초시 명태(코다리) 가공

2. 배정심사협의회 조기 개최

- 농·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 도입·입국이 가능토록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일정을 앞당겨 조정

※ (기존) 2월(전반기), 7월(후반기) → (개선) 12월(전반기), 6월(후반기)

3. 결혼이민자 가족·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

- 무단이탈에 대한 우려가 낮고,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·친척의 경우,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

※ (기존) 만 30세 ~ 55세 → (개선) 만 19세 ~ 55세

4. 외국인 유학생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

- 유학생(D-2), 어학연수(D-4) 체류자격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,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근로 참여를 허용

※ 단,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은 유학생으로, 학기 중 주말·휴일 및 방학 기간에만 계절근로 참여 가능